

외국인주민들의 거주지신고에 대하여

외국인주민들은 일본국내에서 처음으로 거주지를 정했을때 또는 일본국내에서 거주지를 변경했을때

[거주지의 신고]를 해야합니다.

거주지를 신고하면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의 뒤면에 새로운 주소가 기재됩니다.

신고기간

거주지를 정해서 14 일 이내

신고인

본인 또는 본인과 동일세대의 친족

신고시에 필요한 것

재류카드 혹은 특별영주자증명서

접수창구

코세키주민카주민키로쿠가카리 (1 층 6 번창구)

※상세내용은 코세키주민카주민키로쿠가카리에 문의하십시오.

문의

코세키주민카주민키로쿠가카리

〒116-8501

아라카와쿠아라카와 2 - 2 - 3 (본청사 1 층)

전화 : 03-3802-3111 (내선 : 2362)